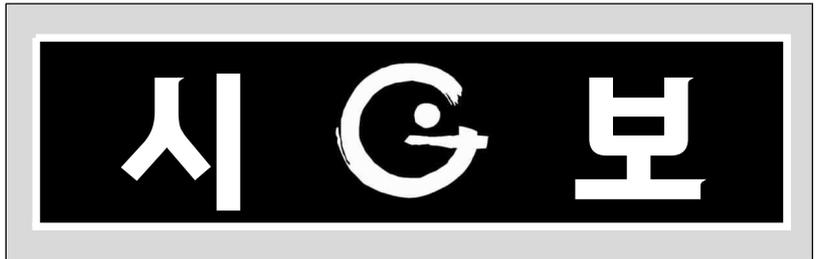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b>선 람</b>	<b>기관의 장</b>



## 제13호 2024. 3. 27.(수)

###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4-98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 1

###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4-766호	2023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	3
광양시 공고 제2024-769호	광양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43
광양시 공고 제2024-786호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50
광양시 공고 제2024-787호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67
광양시 공고 제2024-788호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74
광양시 공고 제2024-813호	도로지정공고 .....	85

<b>회 람</b>										
----------------	--	--	--	--	--	--	--	--	--	--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7.

### 광 양 시 장

####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4길 20-4 외 5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27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3.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 부여 6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60-9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대밭1길 120	20240327	20081001	옛 지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1880-6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대로 64 (성황동)	20240327	20210210	도시개발사업 지구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46-1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185	20240327	20081001	법정리명에서 인용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341-2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섬진강자전거길 13216-16	20240327	20210226	하천명(섬진강)을 활용하여 명명
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336-8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도솔로 229-21	20240327	20090623	도솔봉이라는 지형지물에서 인용
6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762-2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4길 20-4	20240327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 2023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과 관련된 전년도 재난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4. 3. 31.

광양시장

###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2023년도에는 재난이 총 3회 발생하여 농작물 472.6ha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재난 피해자에게 재난지원금 1,45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재난 유형별로 태풍 1회, 집중호우 1회, 이상저온(한파) 1회가 발생하였으며 재난 피해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우리시의 재난발생현황은 풍수해로 인한 재난이 가장 빈도 높게 발생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인 안전과는 22명으로 5년 평균보다 2명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1명 증가 하였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6종으로 334개소에 설치되었으며,



-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업무 교육을 16과정, 30명이 이수하였으며, 지역 자율방재단 337명과 지역주민 26,370명이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 교육·훈련을 받았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교통사고 예방 등의 홍보를 위하여 시민 1,901명이 참여한 안전점검 캠페인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국가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민방위의 날 등을 지역 언론과 시 홈페이지에 50회 홍보하였습니다.
- 안전관리계획 및 정책의 총괄·심의를 위하여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신속한 재난 대응·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 예산은 370억원을 확보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40개 재난방지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1,866백만원이나 4,512백만원 확보되어 241.8% 확보 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4,960백만원 보다 448백만원 감소하였고, 지난해보다 1,50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5년 평균 2,737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38백만원 으로 지난해보다 584백만원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C등급으로 지난 진단결과와 동일합니다.

◆ 그 밖에,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내진설계대상 총 36개소 중 29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82.9% 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풍수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4,339명에 대해 가입지원하였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시의 재난관리역량은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 발생 후 사유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 추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앞으로도 광양시는 재난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2023. 4.	한파 (이상저온)	농작물피해 456ha	재난지원금 1,341백만원 지원	지원완료
2023. 6. 27.	집중호우	농작물피해 4.4ha	재난지원금 34백만원 지원	지원완료
2023. 8. 9.	태풍(카눈)	농작물피해 4ha	재난지원금 3백만원 지원	지원완료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가. 기구

###### ◦ 사무국



## 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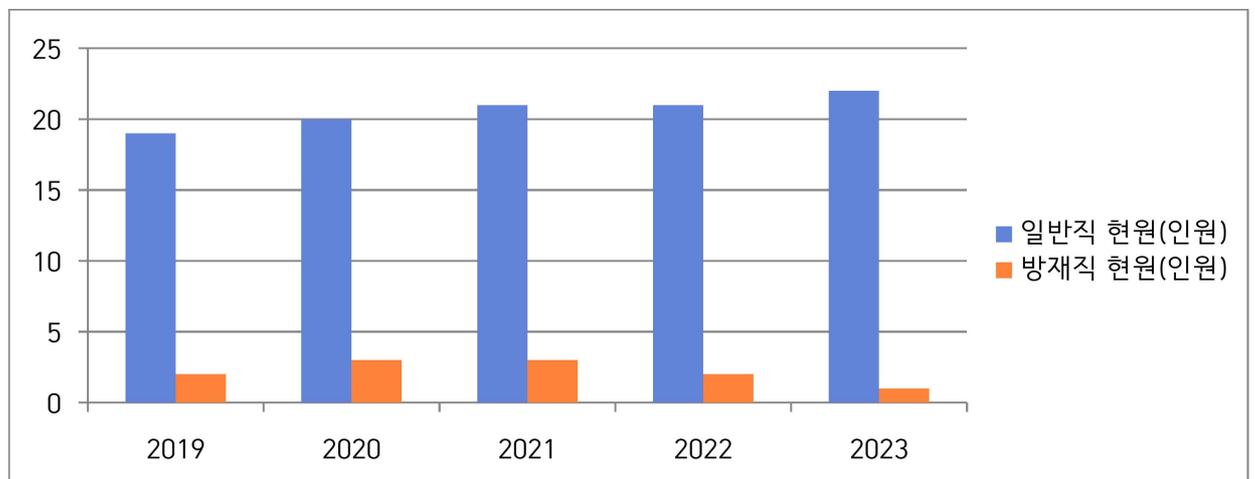
과 별	계	일 반 직								청원 경찰	공무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23	23	1	1	5	5	3	7	-	1
	현원	22	22	1	1	5	4	3	7	-	1

## 다. 방재안전직 정·현원 현황

과 별	계	일 반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3	3	-	-	-	1	1	1
	현원	1	1	-	-	-	1	-	-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직 현원(인원) * 방재안전직 포함	19	20	21	21	22
방재안전직 현원(인원)	2	3	3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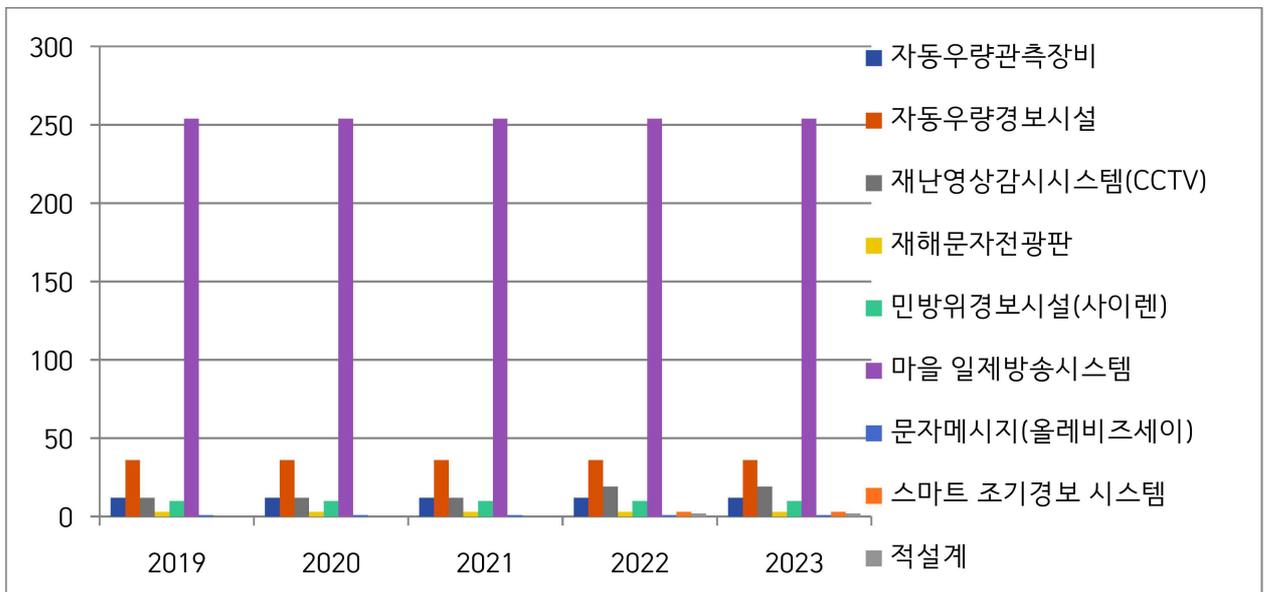


## ②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가. 현황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우량관측장비	12	각 읍면동 사무소
자동우량경보시설	36	광양시청사, 4대계곡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9	광양시 일원
재해문자전광판	3	옥룡면 추산리 삼정교 외 2개소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0	광양시청 옥상 외 9개소
마을 일제방송시스템	254	광양시 읍면동 마을
문자메시지(올레비즈세이)	1	광양시청
스마트 조기경보 시스템	3	광양읍, 길호대교
적설계	2	광양시청, 옥룡 동동마을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자동우량관측장비	12	12	12	12	12
자동우량경보시설	36	36	36	36	36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2	12	12	19	19
재해문자전광판	3	3	3	3	3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0	10	10	10	10
마을 일제방송시스템	254	254	254	254	254
문자메시지(올레비즈세이)	1	1	1	1	1
스마트 조기경보 시스템	-	-	-	3	3
적설계	-	-	-	2	2



###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 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현황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 16개 과정, 30명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인원	비고
계			30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1기)	1.18. ~1.2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사이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설계과정(1기)	2.15. ~2.17.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5기)	3.13. ~3.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
2023년 방재기상업무 전문교육	3.15. ~3.16.	기상기후인재개발원	2	“
재난공보과정(1기)	3.20. ~3.2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8기)	4.24. ~4.26.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
제1기 실무자 재난안전	4.27. ~4.28.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18. ~5.31.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1	“
재난구호심리과정(2기)	6.28. ~6.3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15기)	7.26. ~7.28.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
밀폐공간 질식재해 안전과정	7.18. ~7.19.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
제2기 관리 재난안전	9.22.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4	“
재난안전 신규실무자과정(10기)	10.11 ~10.13.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
제2기 실무자 재난안전	10.12. ~10.13.	전라남도인재개발원	1	“
제3기 실무자 재난안전	11.23. ~11.24.	전라남도인재개발원	5	“
재난안전 신규관리자과정(6기)	12.4. ~12.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여름철 재난대비 교육	6.12.	농업기술센터	15명	심폐소생술 및 소방안전 교육	광양시	
반지하주택 주민 대피훈련	6.29.	광양읍	2명	반지하주택 주민 대피훈련	광양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9.19.	성황스포츠센터	10명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광양시	
자율방재단 교육 및 간담회	10.5.	광양국민체육센터	343명	자율방재단 교육 및 간담회	광양시	
안전한국훈련	11.2.	홈플러스 광양점	43명	물류창고 화재 발생 및 건축물 붕괴 대피 훈련	광양시	
자율방재단 전진대회	11.17.	신안비치호텔	8명	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추진	전라남도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	연중 (6회)	재난안전 상황실 등	15	안전신문고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역할 등 교육	광양시	
안전점검의 날	연중 (6회)	관내일원	15	안전모니터봉사단 합동점검의 날 운영(위험요소 점검 및 신고)	광양시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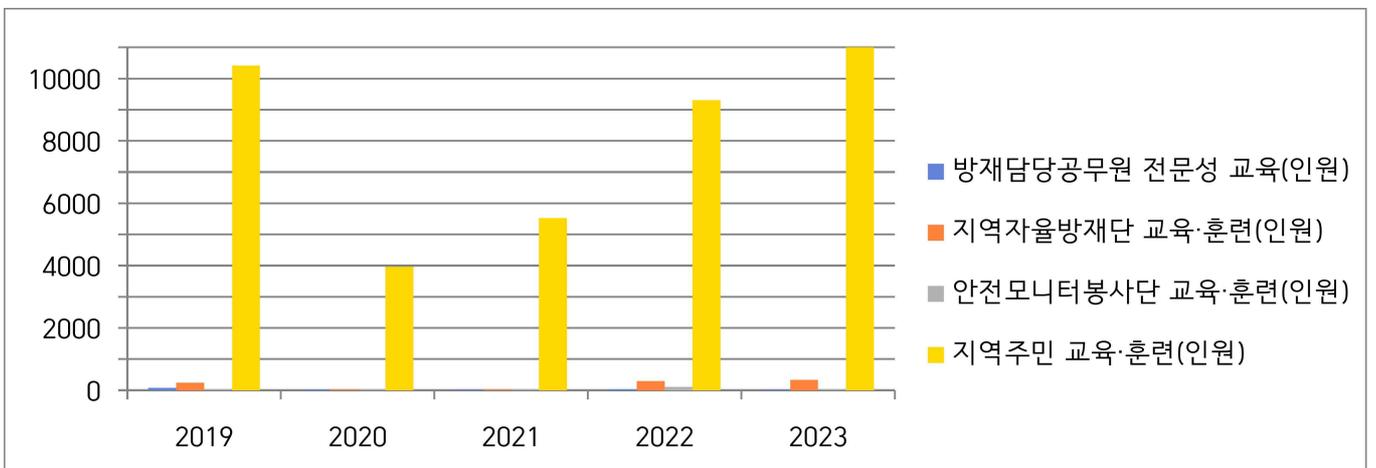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남도안전학당 어르신 안전교육	23. 6. ~ 8. (217회)	경로당, 마을회관 등	2,621	교통안전, 생활안전	안전과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23. 5. ~ 10. (163회)	어린이집, 유치원 등	3,642	교통안전, 생활안전	안전과	
자살예방의 날 기념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뮤지컬	23. 9. 18 ~ 21. (6회)	관내 중고등학교 6개소	2,502	범죄안전, 보건안전	건강증진과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23. 3. ~ 11. (11회)	관내 일원	413	농업기계 순회 안전교육	기술보급과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	23. 12. 19.	커뮤니티센터	600	학교폭력 예방	교육 청소년과	
사이버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23. 10. 11. (39회)	시민 정보화 교육장	140	미디어중독 예방	교육 청소년과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23. 3. ~ 11.	보건소	2,208	자살예방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흡연예방 교육	23. 2. ~ 12.	보건소	12,777	흡연예방	건강증진과	
어린이 재난 안전 체험교육	23. 6. (19회)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667	화재안전, 지진체험 등	안전과	
어린이 안전 한마당	23. 12. 2 ~ 3 (2회)	성황 스포츠센터	800	생활, 교통, 자연재난 교육	안전과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74	21	24	32	30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238	30	28	292	337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훈련(인원)	13	13	18	108	15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10,416	3,960	5,521	9,309	26,370



## 나. 안전모니터봉사단 제보·처리 실적

### ◆ 제보·처리 실적 현황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842	842	0	0	

- 안전모니터봉사단 : 15명, 안전보안관 : 25명

## 다.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1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	23.3.22.~23.	관내	20
2	집중안전점검 캠페인	자율안전점검표 배부 및 홍보	23.5.24.	관내	30
3	자율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및 홍보	자율안전점검표 배부 및 홍보	23.6.12.	관내	20
4	폭염대비 캠페인	국민행동요령 홍보	23.8.4.	관내	100
5	물놀이 안전캠페인	안전 관리 홍보	23.8.7.~8.8.	관내	30
6	승강기 합동훈련	훈련 및 교육 실시	23.9.19.	관내	120
7	고맙습니다 캠페인	5대 불법 주정차 등 홍보	23.9.22.	관내	100
8	전직원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23.4.17.~28.	관내	1,402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1	광양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민의 생활	광양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23.1.2.	프레시안
2	광양시, 설 명절 종합대책 점검	설 명절 대비 재난·사고 대비	23.1.19.	프레시안
3	가뭄 극복 위해 물절약 실천하세요	가뭄재난 대비 물절약 홍보	23.1.24.	뉴스워커
4	광양시, 물류창고 화재방지 및 피해 최소화 업무협약 체결	광양시, 광양소방서, 서강기업 물류창고 화재방지 업무협약 체결	23.2.4.	뉴스웨이
5	광양시민 누구나 보장, 시민안전보험 가입	광양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23.2.15.	여수MBC
6	광양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우수기관 선정	안전한국훈련 평가 우수기관 선정	23.3.9.	NSP통신
7	광양시, 전남도 합동 전통시장 안전점검에 나서	전통시장 및 대형쇼핑몰 안전점검 실시	23.3.16.	NSP통신
8	광양시, ‘시민과 직원의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방침 선포	중대시민재해 교육 실시 및 경영방침 선포	23.3.23.	NSP통신
9	광양시, 전남 최초 ‘현장응급의료소 전문교육’ 실시	재난 응급의료 비상대응 전문인력 양성	23.3.26.	에너지경제
10	광양시,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교육 실시	재난·사고 발생 시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 및 안전 확보	23.4.4.	NSP통신
11	광양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2023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23.4.19.	NSP통신
12	광양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노후·위험시설 등 합동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해소	23.4.24.	NSP통신
13	광양시, 2023년 어린이 재난 안전체험교육 운영	재난 안전체험교육으로 어린이 안전의식 향상	23.5.1.	NSP통신
14	광양시, 2023년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 운영	생활안전·교통안전 중심 어르신 대상 예방교육 실시	23.5.1.	NSP통신
15	광양읍, 폭염 대비 그늘막 운영	폭염 대비 그늘막 운영을 통한 시민 보호	23.5.9.	NSP통신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16	광양시, 어린이 안전교실 성료 ..눈높이 교육 호평	어린이들의 재난 및 사고대응능력 향상과 안전한 생활습관 형성	23.5.18.	데일리한국
17	광양시,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4년 연속 수상'	선제적 예방을 통해 안전도시 광양 조성	23.5.19.	뉴스워커
18	광양시, 재난관리평가 '전국 우수기관' 선정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대응체제로 안전도시 가양 조성	23.5.22.	뉴스워커
19	광양시, 2023년 집중안전점검 민관합동 캠페인 전개	옥곡 5일시장에서 집중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23.5.25.	NSP통신
20	광양시 '다산안전대상'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4년 연속 우수관 전성 및 재난 안전분야별 최고 평가	23.6.5.	뉴스핍
21	광양시, 안전대전환 '자율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자율적 점검 공무원, 자율방재단 등 홍보	23.6.13.	장애인신문
22	광양시, 노후 건축물 집중안전점검 실시	노후 건축물 집중안전점검 실시를 통한 선제적 예방	23.6.16.	NSP통신
23	광양시, 여름철 대비 본청과 읍·면·동간 상호 협력	여름철 재난대비 읍면동장 회의 실시	23.6.23.	NSP통신
24	광양시-광양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실시	예고없는 화재와 재난을 대비하여 합동 소방훈련 실시	23.6.26.	NSP통신
25	광양시, 여름철 풍수해(호우·대풍) 사전대비 점검회의 개최	시장 주재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점검회의 개최	23.7.7.	NSP통신
26	광양시, 장마 집중기간 '인명피해 우려 지역' 현장 점검	시장, 부시장 주재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장점검 실시	23.7.12.	NSP통신
27	정인화 광양시장, '호우피해' 현장 점검	호우피해 현장점검 및 비상근무 실시를 통한 예방활동 철저 당부	23.7.12.	뉴스워커
28	여수·광양 등 산사태 우려 166명 대피	산사태 우려 주민 일시대피 실시	23.7.16.	노컷뉴스
29	나흘간 292mm 쏟아진 광양, 주민 대피 잇따라	대피 주민 긴급구호물품 배부 및 재난상황실 가동	23.7.18.	노컷뉴스
30	'산사태 발생 위험' 광양 가야산 중북도로 통행금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선제적 피해예방대책 실시	23.7.18.	뉴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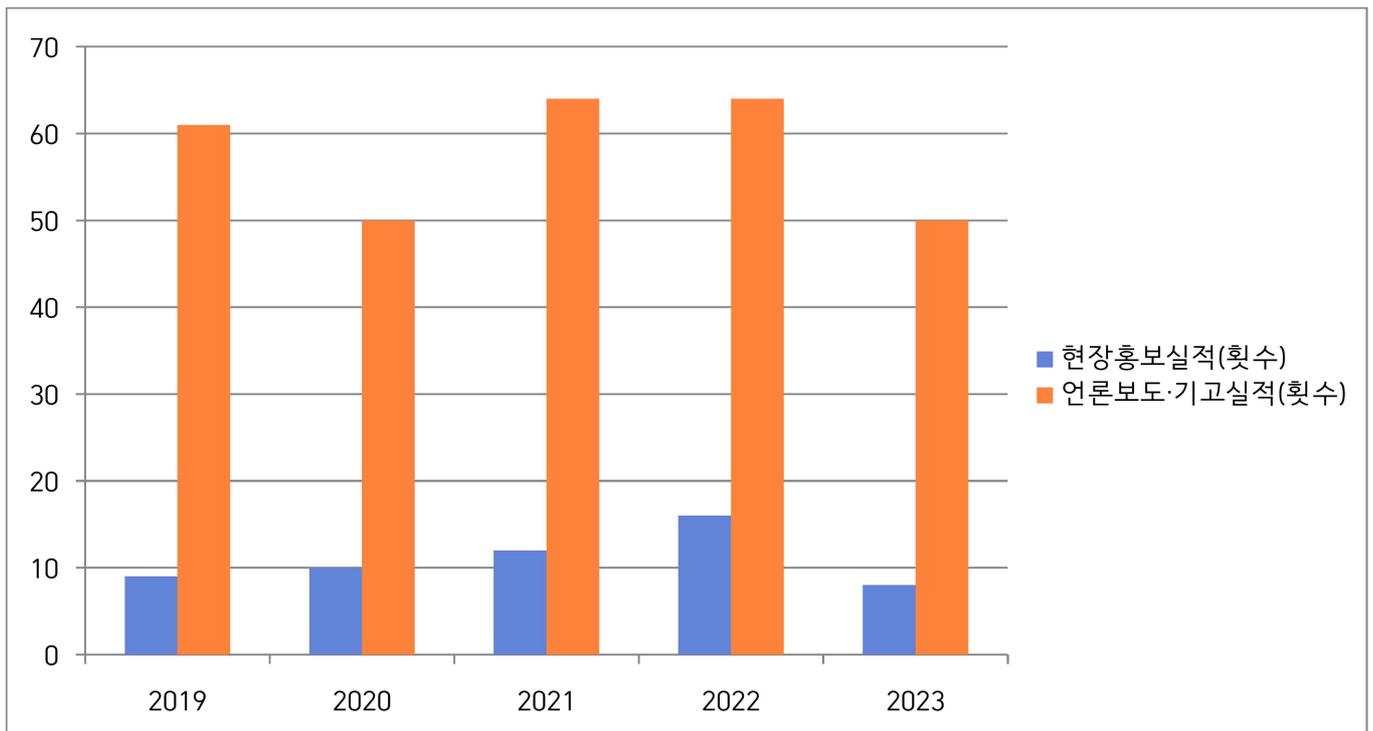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31	정인화 광양시장, 가야산 중북도로 '유실 징후 지역 점검'	사전예방을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안내문자를 통한	23.7.19.	NSP통신
32	광양시 '공원시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심공원 시설물 복구 총력	23.7.20.	뉴스워커
33	광양시, 호우 대비 '읍면동 재난대책 회의' 개최	부시장 주재 잦고 강한 극한호우에 따른 대책회의 실시	23.7.24.	이뉴스 투데이
34	광양시, 종마 배수펌프장 펌프일체형 '수문 교체'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재난 재해 대비 수문교체	23.8.1.	뉴스워커
35	광양시, 여름철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물놀이 현장 점검	폭염대책기간 중 경로당, 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 점검	23.8.3.	NSP통신
36	광양시, 태풍 카눈 대비 '상황판단회의' 개최	시장 주재 태풍 대비 상황판단회의 개최	23.8.8.	이뉴스 투데이
37	광양시, 여름 휴가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여름철 안전점검의 날 맞이 안전점검 실시	23.8.9.	NSP통신
38	정인화 광양시장, 태풍 카눈 현장 곳곳 점검	태풍 북상 이후 현장점검 실시	23.8.10.	데일리 한국
39	광양시, 경로당 긴급 냉방비 선제적 지원	재난급 폭염 대비 경로당 긴급 냉방비 지원	23.8.11.	뉴스워커
40	광양시, 상습 침수구역 침수 방지공사 긴급 진행한다	마동정수장 남측돌 일원 재해·재난 목적 침수 방지공사 추진	23.8.30.	데일리 스포츠 한국
41	광양시, 이·통장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재난의료지원팀 강사 초빙 이통장 대상 교육 실시	23.8.30.	NSP통신
42	광양시, 안전한 추석 '명절 종합대책 보고회' 개최	명절 대비 재난 안전관리 종합대책 보고회 개최	23.9.12.	이뉴스 투데이
43	광양항 컨테이너 유해물질 유출 대응 훈련	민관공 합동 광양항 유해물질 유출 대응 훈련 실시	23.9.20.	노컷뉴스
44	광양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모집	산불재난 대비 감시원 모집	23.9.25.	NSP통신
45	광양항서 안전한국훈련	광양항 해상에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3.10.23.	연합뉴스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46	광양 중앙하수처리장, 광양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실시	23.10.25.	NSP통신
47	광양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산불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산불재해 예방	23.11.2.	NSP통신
48	광양시,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비 안전한국훈련 실시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3.11.3.	NSP통신
49	광양시 '2023 어린이 안전한마당' 성료	안전 한마당 행사 실시	23.12.13.	시민의 소리
50	광양시, 2023년 화랑훈련 道 우수기관 기관 선정	비상대비태세 성공적 수행한 광양시 화랑훈련 우수기관 선정	23.12.19.	NSP통신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현장홍보실적(횟수)	9	10	12	16	8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61	50	64	64	50



####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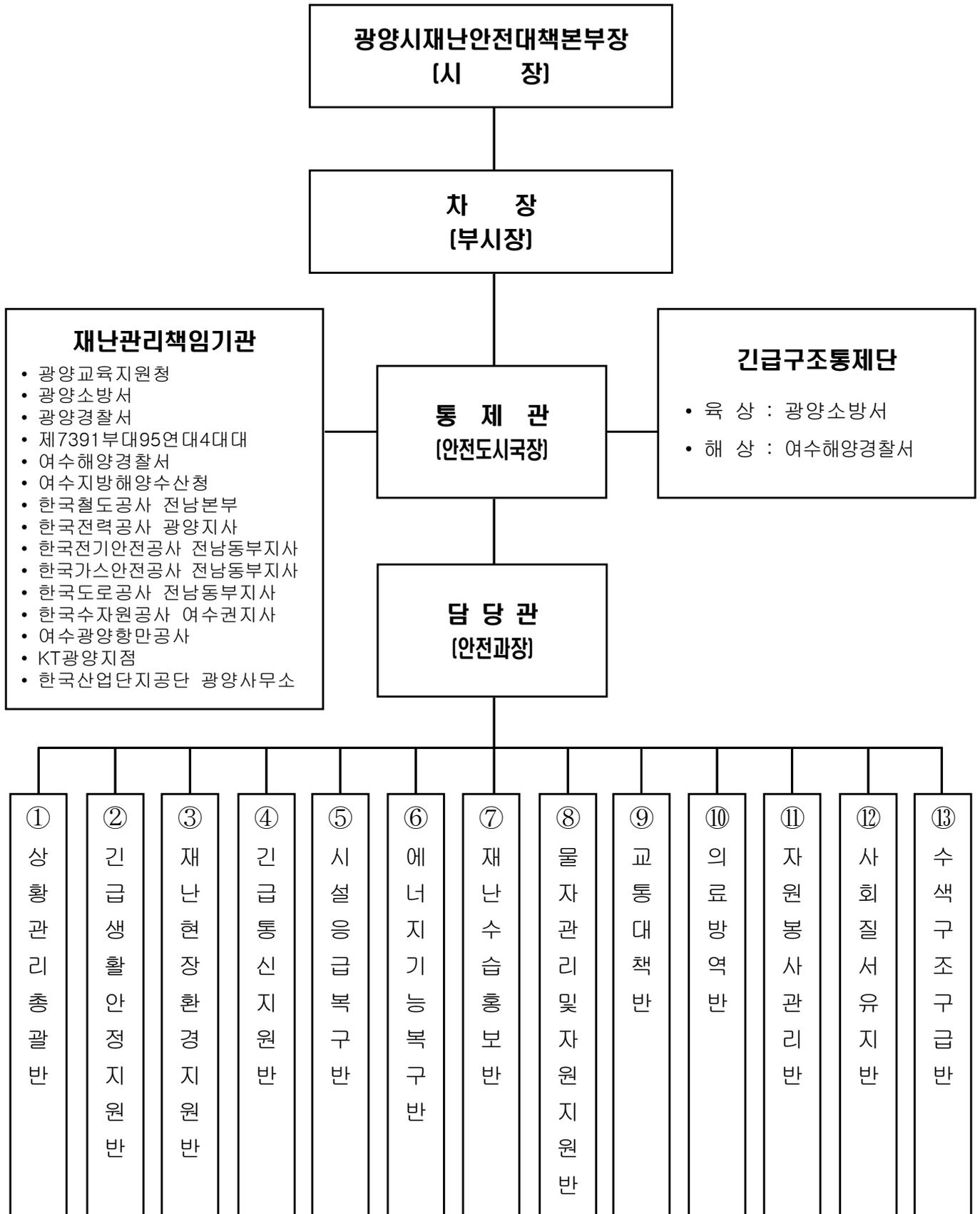
#####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위원장 : 시장 · 위 원 : 21인	· 광양시에서의 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 조정 · 광양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 광양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지역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처리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실무 위 원 회	같은 법 제11조 제3항	· 위원장 : 부시장 · 위 원 : 19인	· 위원회에 부칠 의안 검토 ·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재난안전대책 본 부	같은 법 제16조	· 본부장 : 시장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 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 긴급구조 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 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안전행정 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

## ○ 조 직



##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통제관		대책본부장·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대책본부장·차장·통제관 보좌 및 실무업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li> <li>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li> <li>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li> <li>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li> <li>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li> <li>7. 화상회의 준비·운영</li> <li>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li> </ol>	
	상황보고서 작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li> <li>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li> <li>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li> <li>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li> <li>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li> <li>6. 인명피해 상황관리</li> <li>7. 재산피해 상황관리</li> <li>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li> <li>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li> <li>10. TV 방송 모니터링</li> <li>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li> </ol>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대책본부회의 개최</li> <li>2. 현장상황관리관 파견·관리</li> <li>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li> <li>4. 본부장, 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li> <li>5. 비상근무 단계 결정</li> <li>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li> <li>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li> <li>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li> <li>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li> <li>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li> <li>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li> <li>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li> </ol>	
	행정지원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b>긴급생활 안정지원</b>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b>재난현장 환경정비</b>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현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b>긴급 통신지원</b>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도 및 시·군 복구현황 파악	
<b>시설 응급복구</b>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도 및 시·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b>에너지기능 복구</b>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도 및 시·군 복구현황 파악	
<b>재난수습 홍보</b>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시·군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8.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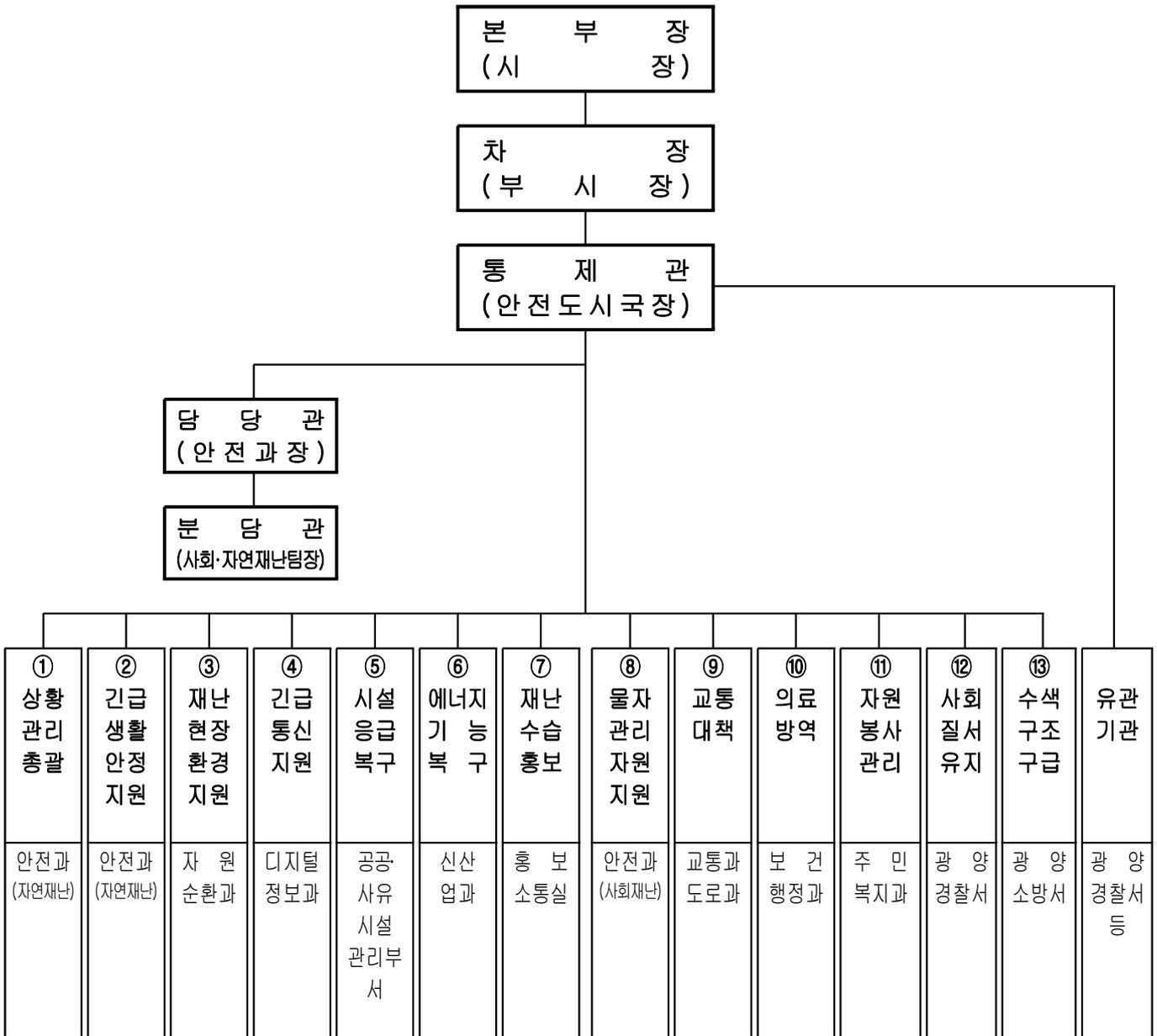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b>물자관리 및 자원지원</b>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b>교통대책</b>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4.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b>의료·방역</b>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b>자원봉사 관리</b>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 수리 등 추진	
<b>사회질서 유지</b>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b>수색, 구조·구급</b>	1. 신고접수 및 상황전파(재난수습 주관부서 및 유관기관) 2. 초동대응 현장지휘대 출동조치 및 재난 진행상황 실시간 파악 3. 재난상황 정보제공 등 24시간 긴급상황보고 대책반 운영 4. 재난지역 인명구조·수색 활동을 위한 119구조대 지원 5.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119구급대 지원 6.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7.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및 침수지역 배수지원 8.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b>유관기관</b>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나) 재난현장 안전관리체계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



※ 시설응급복구(15개부서)

- 공공시설(11개부서) : 철강항만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허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시설관리과
- 사유시설(4개부서) : 투자경제과,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 유관기관(11개기관) : 광양소방서, 광양경찰서, 광양교육지원청,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 KT 광양지점, 육군 7391부대4대대



## ○ 조직의 임무

기 능 별	재난유형별	주 요 임 무
본 부 장(시 장)	태풍·호우 대설 등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총괄 · 재난상황 총괄지휘(비상 Ⅱ·Ⅲ단계)
차 장(부 시 장)	"	· 시 본부장 보좌 · 재난상황 총괄지휘(비상 Ⅰ 단계)
통 제 관(안전도시국장)	"	· 시 본부장, 차장 보좌 · 재난상황 총괄지휘(상시·사전대비단계)
담 당 관(안전과장)	"	· 시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실 무 반	①상황관리총괄	· 시 담당관 보좌 · 재난업무 총괄수행
	②긴급생활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이재민 구호 등 긴급대책 지원
	③재난현장환경지원	·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④긴급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⑤시설응급복구	· 피해시설(공공/사유) 응급복구 지원
	⑥에너지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
	⑦재난수습홍보	· 재난대처·수습 관련 각종 정보 배포·조정
	⑧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재난물자계획·관리·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
	⑨교통대책	· 교통수단 지원, 겨울철 제설작업·상황관리
	⑩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⑪자원봉사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⑫사회질서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⑬수색, 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주) 직무대행 : 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제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구 분	주 요 업 무	비 고
공 통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위주로 시설별 소관부서 (도로 유실 - 도로관리사업소, 농작물 침수 - 농업지원과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황 파악</li> <li>· 관련 부서의 소관업무 이행사항 파악 및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li> <li>· 소관부서 전화번호·담당자 등 정확히 파악</li> <li>· 「상황일지」 상황총괄반장에게 결재(익일 08:00)</li> </ul>	
광 양 소 방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 수색, 구조·구급 활동</li> <li>· 환자 이송 등</li> </ul>	
광 경 양 찰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간 계곡, 하천, 유원지 등의 야영·등산객, 행락객 대피현황 파악</li> <li>· 교통두절·통제 및 해제현황 파악</li> <li>· 차량 안전지대 대피 및 자동차 운행자제 계도 현황 파악</li> <li>· 재난지역 경비 및 방법 현황 파악</li> <li>· 기타자료 수집 보도 등</li> </ul>	
광 양 지 원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민 수용시설 점검 및 구호물자 비축현황 파악</li> <li>· 이재민 구호·수용현황 파악</li> <li>· 학교수업 중단 등 조치</li> <li>· 학교시설 복구 등</li> </ul>	
순 천 국 도 유 지 관 리 사 무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현황 파악</li> <li>·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li> <li>· 도로·교량, 하천, 항만, 어항,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현황 지도·확인</li> <li>· 풍수해 및 강설시 광양경찰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통 통제</li> </ul>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전 남 동 부 지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현황 파악</li> <li>· 각종 재난사고 상황 접수</li> <li>· 가스공급 중단 피해복구 등</li> </ul>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순 천 광 양 여 수 지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현황 파악</li> <li>· 각 일선지방행정기관 및 시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li> <li>· 기상청 예보(호우주의보·경보 등) 단계별 각 댐의 저수량과 예상 유입량 분석,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 홍수조절</li> <li>· 예비방류시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및 관계기관에 사전 통보</li> <li>· 댐 수문 조작 변동시 댐의 수위와 유입량, 방류량 등 현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 등</li> </ul>	



구 분	주 요 업 무	비 고
한 도 로 공 사 순 천 지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현황 파악</li> <li>· 각 일선지방행정기관 및 시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li> <li>·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li> <li>· 도로·교량, 하천, 항만, 어항,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상황 지도·확인</li> <li>· 풍수해 및 강설시 관할 고속도로 순찰대와 긴밀한 협조하여 교통 통제</li> </ul>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여 수 권 지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현황 파악</li> <li>· 각 일선지방행정기관 및 시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li> <li>·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 확인</li> <li>· 댐 관리사무소는 댐 관리규정 및 수문 조작 지침에 의거 예비방류 또는 방류량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주민대피 및 피해 방지</li> </ul>	
한 전 력 공 사 광 양 지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현황 파악</li> <li>· 각 일선지방행정기관 및 시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li> <li>· 각종 재난사고 상황 접수</li> <li>·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 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설치 등</li> </ul>	
KT 광양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두절 및 피해 현황 파악</li> <li>· 이재민, 응급복구 등을 위한 통신지원 현황 파악</li> <li>· 대민지원 현황 파악</li> <li>· 기타사항 수집보고 등</li> </ul>	
육 군 7391부대 1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파악 및 대처를 위해 장교 1명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 근무</li> <li>·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파악</li> <li>· 각 일선지방행정기관 및 시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li> <li>·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 운영</li> <li>·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li> <li>·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 병력·장비 지원협조 요청</li> <li>·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 확인 등</li> </ul>	



##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 내용	제정일자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5. 3.16.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연 및 인적재난에 대비한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7. 9. 5.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조례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구성 및 활동 지원, 교육·훈련 등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6. 2. 8.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05. 3. 15.
광양시 재해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기 위한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9. 10. 30.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2005. 7. 27.
광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2011. 12. 28.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012. 11. 7.
광양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진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 내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2012. 11. 21.
광양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평가 조례	광양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3. 11. 27.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7. 4. 5.
광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각종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이상이면 정부(국비) 지원이 가능하나, 상당수 사회재난이 선정기준 이하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2017.11.22.
광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18. 3. 21.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19. 10. 2.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풍수해로부터 광양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23. 6. 7.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국가기반시설	소재지	면적	관리자	비고
광양국가산단	· 광양시 금호동, 태인동 일원	24,733,036㎡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광양 사무소	
광양항	· 광양시 골약동, 금호동 일원	항만구역 116,409천㎡ - 해상 106,713천㎡ - 육상 9,696천㎡	여수광양항만공사	

○ 광양항 현황

구분		선석수(개)	부두길이(m)	하역능력	처리물동량
부두 현황	계	104	24,375	368백만톤	295백만톤
	일반부두	96	21,825	368백만톤	258백만톤
	컨테이너부두	8	2,550	272만TEU	212만TEU
광양항의 하루		· 물동량 269백만톤 처리			
지역경제파급효과		· 생산유발 효과 : 5조 7,347억원, 고용유발효과 : 15,137명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 40건 / 37,096백만원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옥곡 신금리	하천 1.7km, 펌프장 2개소 등	2020.1. ~2026.12.	3,080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통한 재난예방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진상면 하탄치길	사면정비 A=16,500㎡	2022.1. ~2024.12.	1,673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통한 재난예방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진월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진월면 신아리	사면정비 A=25,950㎡	2022.1. ~2024.12.	989	급경사지 정비를 통한 재난예방
골약 군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성황동 산11-3	사면정비 A=9,574㎡	2021.1. ~2025.5.	898	급경사지 정비를 통한 재난예방
옥곡 국사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옥곡면 수평리	사면정비 A=8,603㎡	2022.1. ~2025.5.	2,066	급경사지 정비를 통한 재난예방
다압 향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다압면 고사리	사면정비 A=8,500㎡	2022.1. ~2024.12.	898	급경사지 정비를 통한 재난예방
광양 내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광양읍 우산리	사면정비 A=8,500㎡	2022.1. ~2024.12.	400	급경사지 정비를 통한 재난예방
진상 회두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진상면 어치리	사면정비 A=32,317㎡	2023.2. ~2025.12.	300	급경사지 정비를 통한 재난예방
중마 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동 1696	사면정비 A=9,574㎡	2023.2. ~2025.12.	300	급경사지 정비를 통한 재난예방
가뭄대비 받기반 용수개발사업	광양시 일원	중형관정 4개소	2023.1. ~12	575	용수개발(관정)을 통한 재난(가뭄)예방
신두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광양읍 세풍리	정밀안전진단 1식	2023.2. ~2023.5.	25	안전진단을 통한 재난예방
대죽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옥곡면 대죽리	정밀안전진단 1식	2023.2. ~2023.5.	25	안전진단을 통한 재난예방
산본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옥룡면 산남리	정밀안전진단 1식	2023.2. ~2023.5.	25	안전진단을 통한 재난예방
통사저수지 정밀안전진단	황길동 325번지	정밀안전진단 1식	2023.7. ~2023.10.	20	안전진단을 통한 재난예방
중도지구 받기반 정비사업	진월면 월길리	U형 개거 L=200m 등	2021.3. ~2023.12.	477	받기반 정비를 통한 재난예방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	진월면 송금리	배수로 2km 정비 배수장 1개소 등	2022. 4. ~2025.5.	400	배수개선을 통한 재난예방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태인1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태인동 1087번지	제방보강 그라우팅 L=71m 등	2023.7. ~2024.6.	490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한 재난예방
가두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광양읍 용강리	제방보강 그라우팅 L=19m 등	2023.7. ~2024.6.	334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한 재난예방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진월면 월길리	저류시설, 송수관 3.5km 등	2023.2. ~2025.6.	208	지표수 보강개발을 통한 재난예방
도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다압면 도사리	배수펌프장, 유입수로 등	2023.2. ~2025.6.	62	배수개선을 통한 재난예방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봉강면 조령리	복통보수 32m	2023.1. ~2023.12.	50	저수지 복통보수를 통한 재난예방
하천 기성제 정비	광양시 일원	하천 기성제 정비 1식	2023. 1. ~12.	230	하천 기성제 정비로 재난 예방
하천 퇴적토준설	광양시 일원	하천 퇴적토준설 1식	2023. 1. ~12.	296	하천 퇴적토 준설로 재난 예방
백암소하천 정비사업	옥곡면 묵백리	하천정비 L=2.4km	2021.7. ~2024. 4.	1,047	소하천 정비로 재난예방
저곡소하천 정비사업	봉강면 부자리	하천정비 L=2.4km	2021.7. ~2024. 12.	994	소하천 정비로 재난예방
옥동소하천 정비사업	옥룡면 용곡리	하천정비 L=0.392km	2022.11. ~2023. 11.	994	소하천 정비로 재난예방
국가하천유지보수사 업	섬진강 일원	국가하천(섬진강) 유지보수	2023. 1. ~12.	405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재난 예방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광양읍 일원	차집관로 정비 L=5.05km, 맨홀정비 62개소	2021. 1. ~2024. 12.	4,559	노후관로정비로 효율적인 처리장 운영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중마동 공공하수처 리장	처리장 증설 5,000ton/일	2020. 1. ~2024. 12.	9,000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하수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증설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중마동 공공하수처 리장	처리장 개량 1식	2021. 1. ~2025. 12.	1,320	처리장 시설개량에 따른 하수처리 수질개선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광양읍 공공하수처 리장 일원	처리장 증설 6,000ton/일	2021. 5. ~2025. 12.	621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하수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증설
스마트 하수도 도시침수 대응사업	광양시 일원	스마트하수도 관망시설 구축 1식	2021.11. ~2024.12.	1,367	스마트ICT측정 장비를 활용한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 선도사업	광양시 일원	하수도시설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1식	2021.12. ~2024.10.	693	관로 및 시설물 관리를 통한 침수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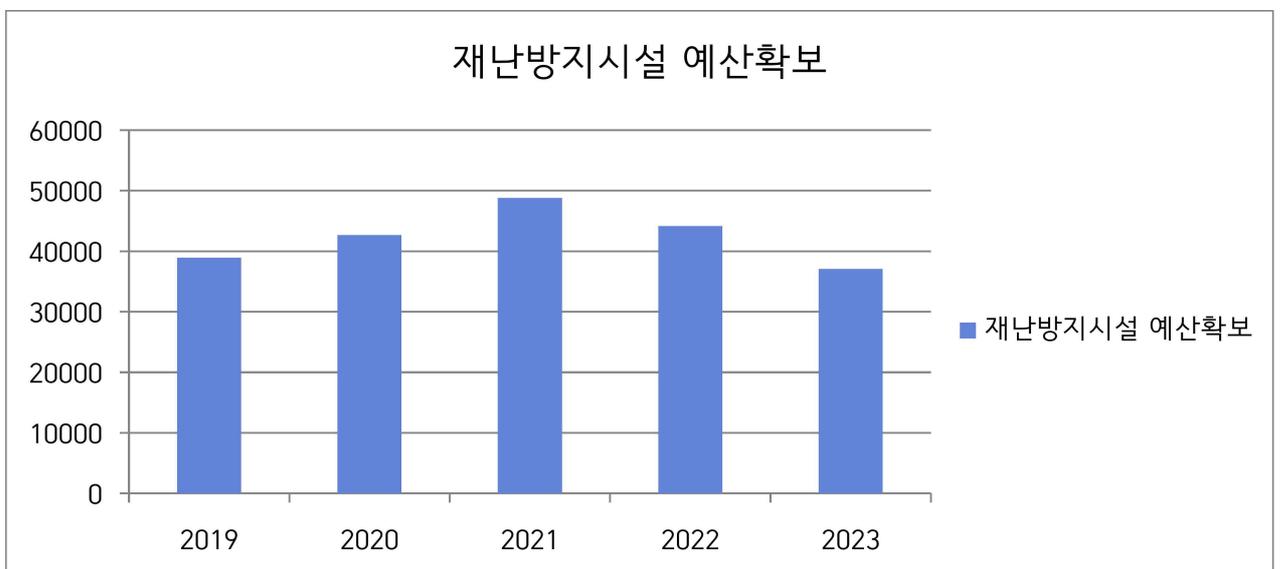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정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성황동 정산마을 일원	신규 오수관로 L=1.0km 등	2023.1. ~2025.12.	220	신규 하수관로 설치를 통한 주거생활환경 개선
광양읍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광양읍, 골약동 일원	노후 오수관로 정비 L=6.2km 등	2022.3. ~2024.12.	337	신규오수관로 보급으로 시민생활환경개선 및 보건위생향상
봉강·옥룡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봉강면, 옥룡면 일원	신규 오수관로 설치 L=6.1km 등	2023.1. ~2025.12.	340	신규오수관로 보급으로 시민생활환경개선 및 보건위생향상
광양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광양읍 일원	노후 오수관로 정비 L=3.6km	2023.1. ~2025.12.	300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정비를 통한 침수 사전예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광양시 봉강면 외 5개면	모바일 운영시스템 및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1식	2022.1. ~2023.8.	200	비상시 원격제어를 통한 신속대응 필요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선사업	다압면 고사리, 도사리	하수관로 L=4.55km, 중계펌프장 신설 등	2022.4. ~2024.12.	727	통합처리장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수질관리
중앙근린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성황동 1655일원	신규 오수관로 L=1.6km	2022.1. ~2023.6.	150	신설 오수관로 및 펌프시설 설치를 통한 침수예방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38,910	42,700	48,811	44,163	37,096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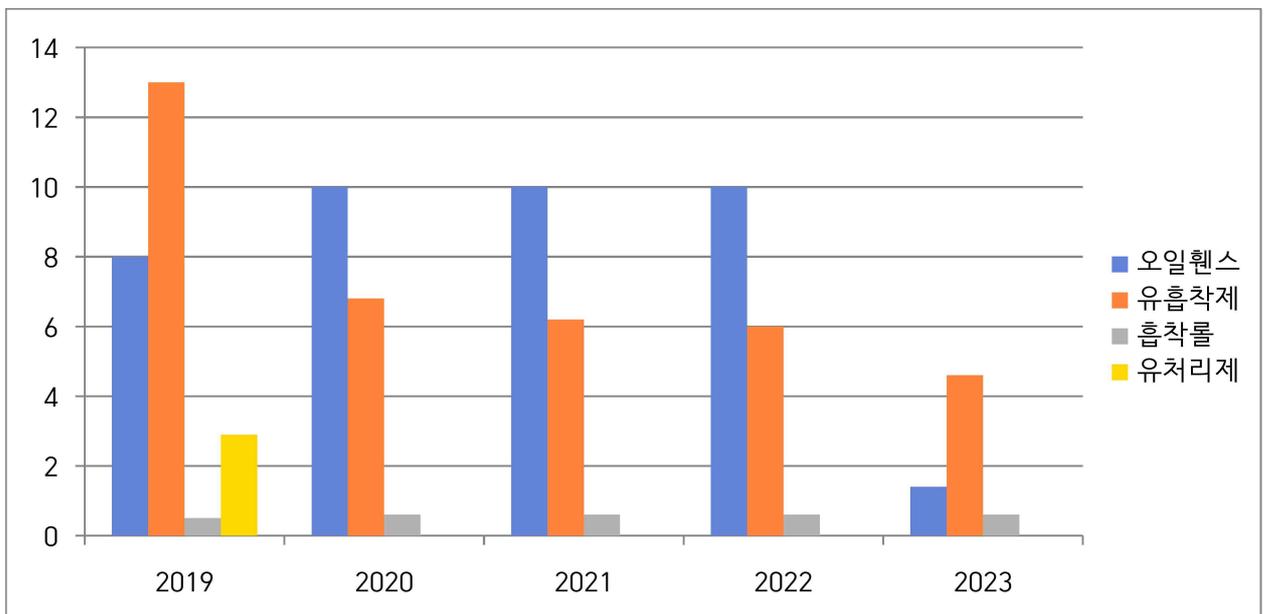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오일웬스	유흡착제	흡착물	유처리제
	km	천매	km	kl
계	1.4	4.6	0.6	0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오 일 웬 스	8.0km	10.0km	10.0km	10.0km	1.4km
유 흡 착 제	13천매	6.8천매	6.2천매	6천매	4.6천매
흡 착 물	0.5km	0.6km	0.6km	0.6km	0.6km
유 처 리 제	2.9kl	0kl	0kl	0kl	0kl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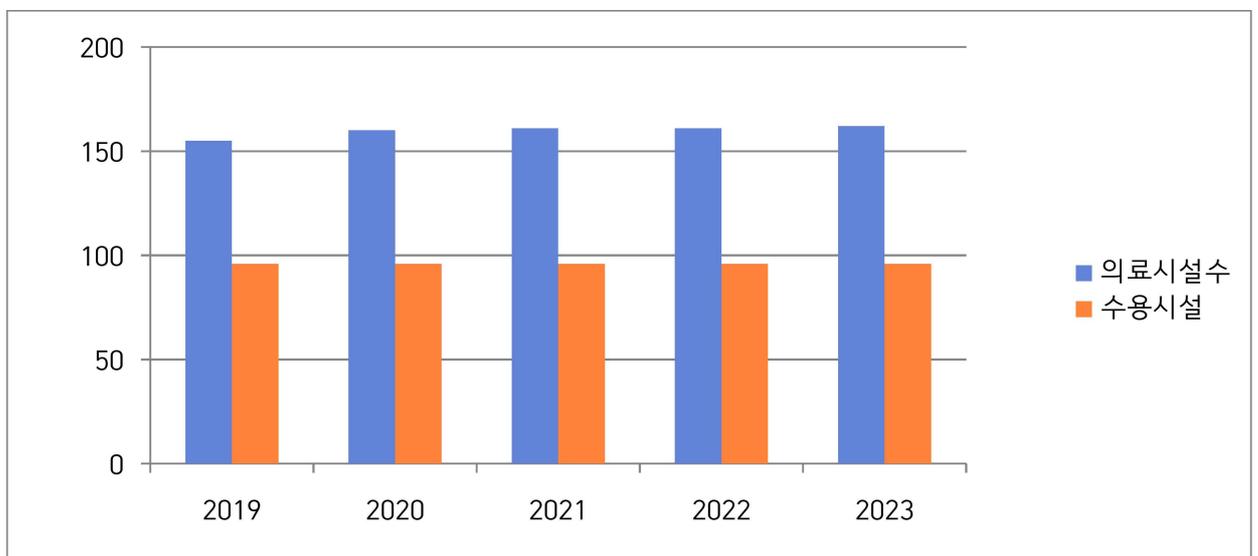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계	161	142	408	7대	1,579	6
병 원	136	126	288	6대	1,579	6
보건소	25	16	120	1대	-	-

[수용시설]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96	106,463	40	84,310	25	1,153	16	7,373	15	13,627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의료시설수		155	160	161	161	162
수용시설	개소	96	96	96	96	96
	수용인원(명)	141,301	141,301	141,301	106,463	106,463



## 나. 장비 지정

### [구조장비]

구분	계	구조 공작차	구명동의	구명보트	산소 호흡기	잠수세트	에어백
총계	485	1	50	9	420	4	1

###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견인차	청소차	기타
계	69	1	39	2	19	8

###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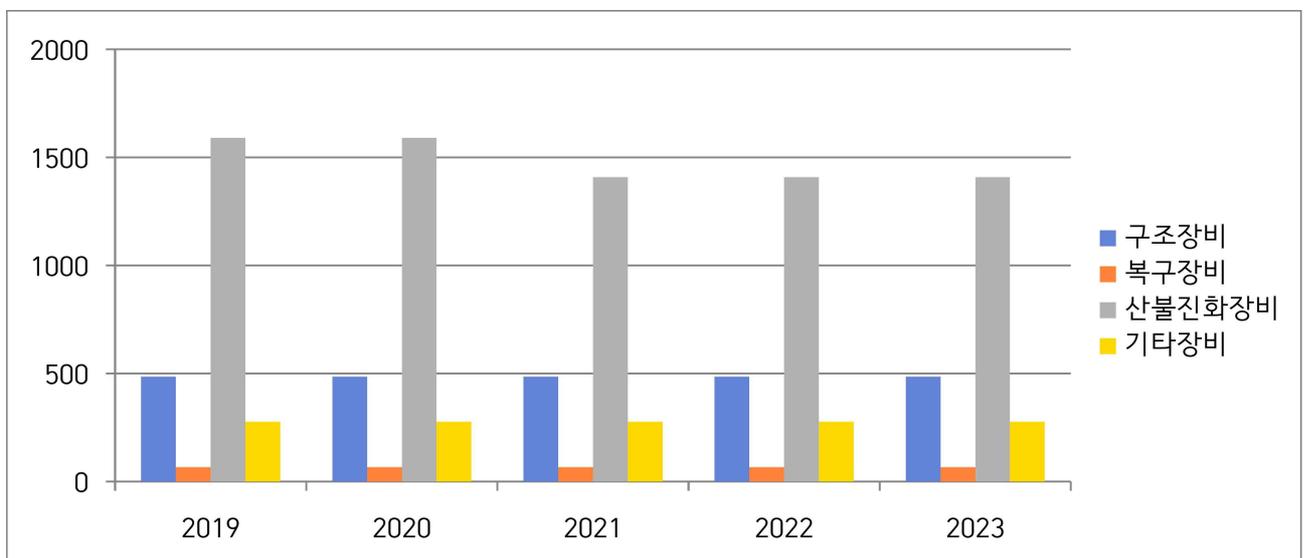
구분	계	진화차	기계화 시스템	휴대용 무전기	무선기	등짐 펌프	갈퀴류	개인장 비세트	동력톱 (전기톱)
계	1,408	13	6	78	26	480	650	150	5

### [기타장비]

구분	계	용접기	컴프레서	양수기	절단기	화학차	통신 복구차
계	276	9	12	230	22	2	1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구조장비	485	485	485	485	485
복구장비	67	67	67	67	67
산불진화장비	1,590	1,590	1,408	1,408	1,408
기타장비	276	276	276	276	276



## 다. 인력 지정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기타	비고
인원	200	18	37	35	30	2	6	7	65	-

###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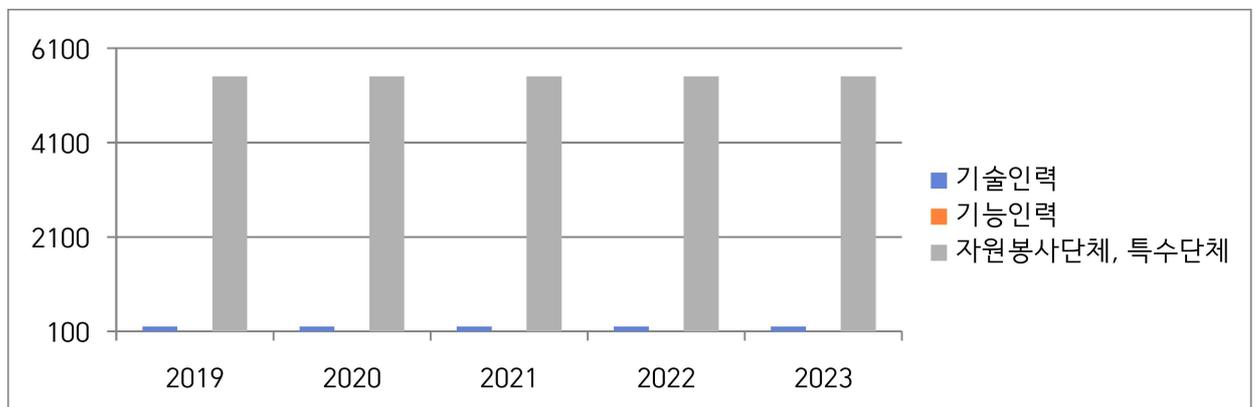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절단공	용접공	중기운전	기타	비고
인원	103	7	15	6	2	28	20	25	-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소방대	재난구조대	수난구조대	안전모니터	안전실천연합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인원	5,414	512	60	50	15	39	67	57	3,957	650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술인력	200	200	200	200	200
기능인력	103	103	103	103	103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5,414	5,414	5,414	5,414	5,414



⑧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화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 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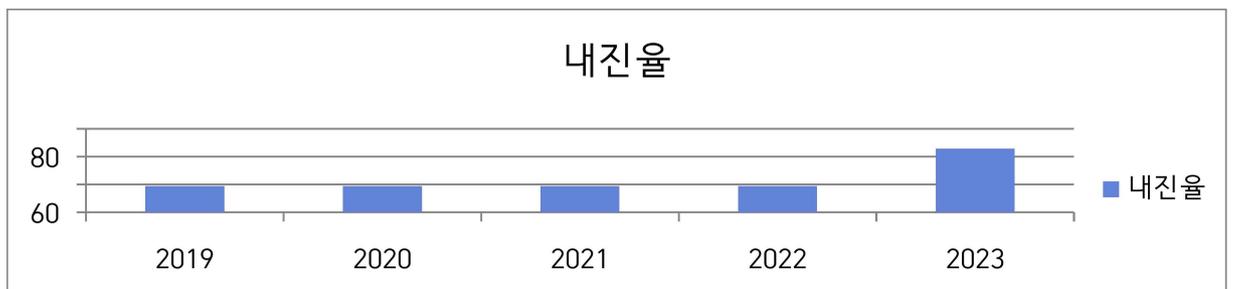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안전한국훈련평가	2023. 12. 20.	행정안전부	보통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23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100
			동수(시설 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공공시설	9	8	-	-	88.9
공공하수처리	5	5	-	-	100
도로시설	11	10	-	-	90.9
수도시설	4	4	-	-	100
폐기물매립시설	4	0	-	-	0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2	2	-	-	100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내진율	69.4	69.4	69.4	69.4	82.9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집행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

#### 가.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1,866 백만원	4,512백만원	241.8%

#### 나.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23,928백만원	25,528백만원	10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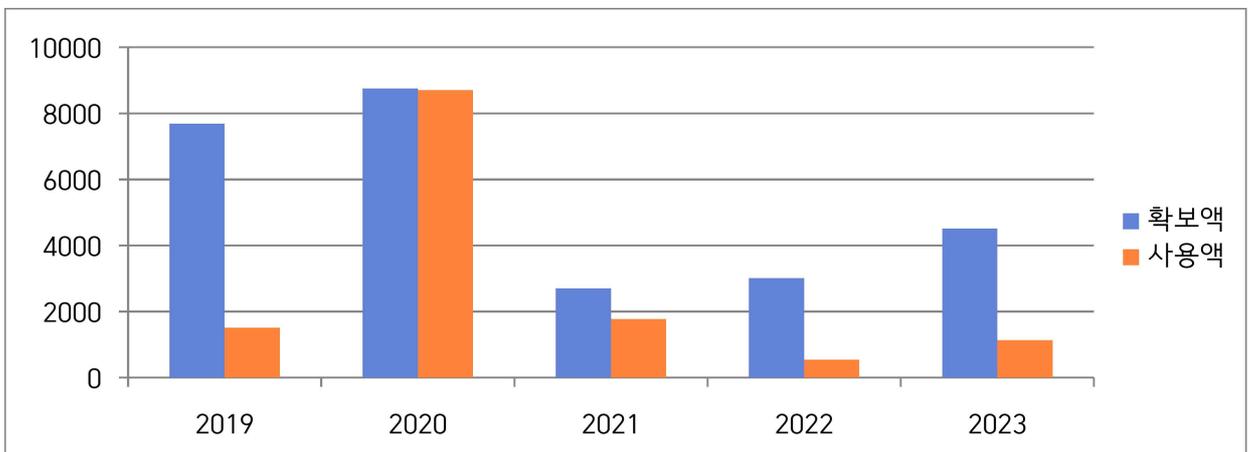
#### 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액 : 1,138백만원

계	재해예방 및 대응	이재민 지원	반환금
1,138	1,120	10	8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확보액 (당해연도)		7,685	8,759	2,698	3,012	4,512
사 용 액	합 계	1,513	8,710	1,774	544	1,138
	공 공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	-	-	-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1,513	8,710	1,774	544	1,138
	민 간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	-	-	-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	-	-	-	-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영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부서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재난	안전과	2012	풍수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전 력	지역경제과	2013	전력마비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가 스	지역경제과	2013	가스 마비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정부중요시설 (청사 등)	회계과	2014	청사 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환경과	2014	유해화학물질유출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대규모수질오염	환경과	2014	대규모수질오염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대규모해양오염	환경과	2014	대규모해양오염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지 진	안전과	2014	지진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대형화산폭발	안전과	2014	화산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고속철도 대형 사고	교통과	2014	고속철도대형사고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육상화물운송	교통과	2014	육상화물운송 마비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항공기 사고	교통과	2014	항공기 사고 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해양선박 사고	철강항만과	2014	해양선박 사고 관련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가축질병	농업지원과	2014	가축질병 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산 불	산림소득과	2014	산불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감 염 병	건강증진과	2014	감염병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보 건 의 료	보건행정과	2014	보건의료 마비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행동매뉴얼 명	소관부서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가 물	안전과	2016	가뭄 및 낙뢰 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안전과	2016	다중밀집시설대형사고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저수지붕괴	건설과	2016	저수지 붕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적조	철강항만과	2016	적조 오염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산사태	산림소득과	2016	산사태 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문화재사고	문화예술과	2018	문화재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다중밀집건축물붕괴	건축과	2018	다중밀집건축물대형사고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식용수	상수도과	2018	식용수 마비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한파	안전과	2019	한파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폭염	안전과	2019	폭염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낙뢰	안전과	2020	낙뢰 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지하안전점검	안전과	2021	지하안전점검 절차와 방법 등

###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부서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재난	안전과	2012	풍수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전력	지역경제과	2013	전력마비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가스	지역경제과	2013	가스 마비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정부중요시설(청사등)	회계과	2014	청사 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과	2014	유해화학물질유출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대규모수질오염	환경과	2014	대규모수질오염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행동매뉴얼 명	소관부서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대규모해양오염	환경과	2014	대규모해양오염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지진	안전과	2014	지진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대형화산폭발	안전과	2014	화산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고속철도대형사고	교통과	2014	고속철도대형사고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육상화물운송	교통과	2014	육상화물운송 마비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항공기사고	교통과	2014	항공기사고 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해양선박사고	철강항만과	2014	해양선박사고 관련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가축질병	농업지원과	2014	가축질병 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산불	산림소득과	2014	산불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감염병	건강증진과	2014	감염병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보건의료	보건행정과	2014	보건의료 마비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가뭄	안전과	2016	가뭄 및 낙뢰 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안전과	2016	다중밀집시설대형사고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저수지붕괴	건설과	2016	저수지 붕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적조	철강항만과	2016	적조 오염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산사태	산림소득과	2016	산사태 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문화재사고	문화예술과	2018	문화재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다중밀집건축물붕괴	건축과	2018	다중밀집건축물대형사고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식용수	상수도과	2018	식용수 마비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한파	안전과	2019	한파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폭염	안전과	2019	폭염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낙뢰	안전과	2020	낙뢰 피해 예방, 대응, 복구관련 현장행동매뉴얼
지하안전점검	안전과	2021	지하안전점검 절차와 방법 등
미세먼지	환경과	2022	미세먼지 예방, 대응 현장행동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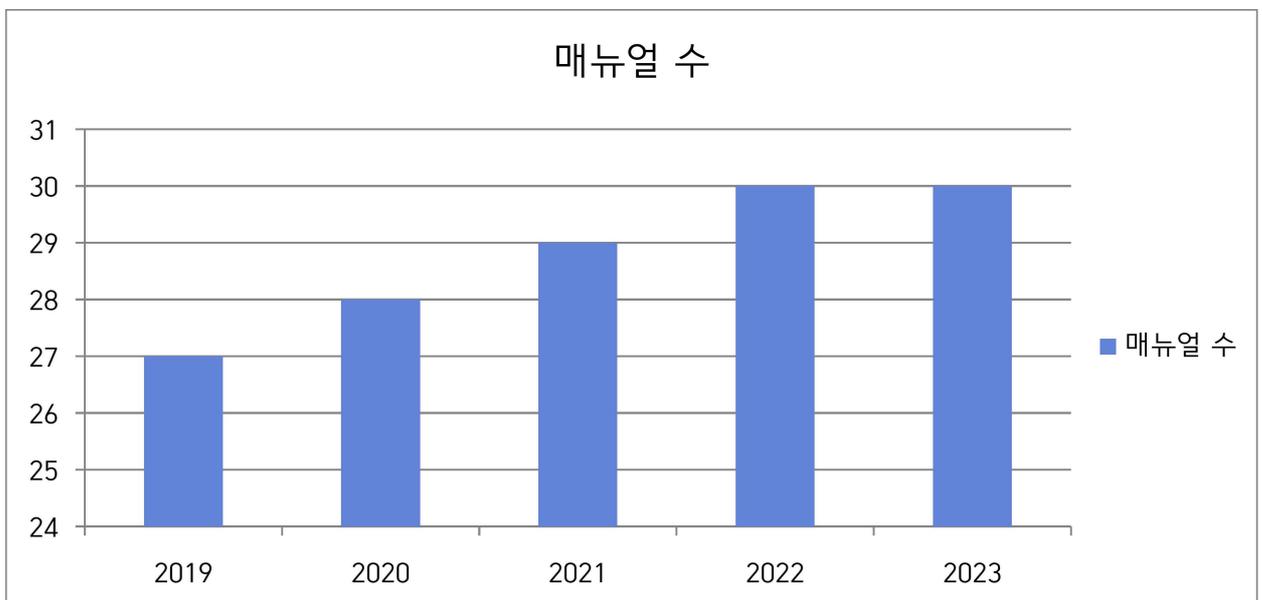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화재사고	23. 5. 24. ~ 12. 04. (11회)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대응훈련	민간시설과 유관기관 합동 화재대응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문화재사고	23. 4. 14. ~ 10. 20. (2회)	문화재사고 대비훈련	문화재 사고 상황을 대비하여 위기상황 훈련을 통한 체계 구축
산사태사고	23. 6. 21. (1회)	산사태취약지역 주민대피 훈련	대피장소 확인 및 취약지 주민대피 사전 안내 등
식용수분야	23. 10. 24. (1회)	유해물질유입 위기대응훈련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지진사고	23. 9. 21. (1회)	관내 대규모 지진 발생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유관기관 합동 지진 및 화재대응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매뉴얼 수	27	28	29	30	30



## 5)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등급]

구 분	재해위험요인	예방대책추진	예방시설정비	종합등급
진단결과	E	B	C	C

### ◇ 연도별 등급 비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등 급	3등급	B	미실시	C	C

##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가. 시민안전보험 시행

- 보험계약자 : 광양시
- 피 보험 자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2024. 2. 11. ~ 2025. 2. 10.
- 보 험 료 : 광양시 일괄납부
- 보장항목 : 22개 항목(국내 사고 발생 시 개별가입 상해보험과 중복 보장)

### 보험가입내용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 후유장애	-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후유장해	-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강도	상해사망	-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후유장해	-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농기계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후유장해	-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만원
익사사고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부상등급 1~5급)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상해후유장 해	-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 은 경우	10만원
자연재해사고 위로금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4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상해사망	-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후유장 해	-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 은 경우	10만원



## 나. 풍수해보험 가입

- 목 적 :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때 시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 정착
- 대상 재 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목 적 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구 분	세 부 대 상
주 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 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 보험금지원 : 총 보험료의 70~100% 지원(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부자가 대납)
- 기 간 :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2년, 3년)도 가능(연중 가입 가능)
- 사업관장 : 행정안전부 / 7개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문의 : 광양시 안전과(☎ 061-797-2268)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광양시 안전과  
(담당자 : 최용범, 전화 : 061)797-22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양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 정 이 유

- 광양시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 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8 조에 따라 광양시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 존속기한(안 제1조 ~ 제4조)
-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 5조 ~ 제 6 조)
- 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안 제7조 ~ 제10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11조)
-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안 제12조)



####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4. 3. 25. ~ 4. 15.(21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 5. 의견 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투자경제과 기업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우편,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33, 투자경제과 (우 57785)
- 전 화 : 061-797-3122
- 팩 스 : 061-797-2583
- 전자우편 : sin2447@korea.kr

※ 우편(전자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계획안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광양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붙임 2

### 광양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광양시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중소기업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양시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지원
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중소기업 발전 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광양시 재무관, 지급 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광양시 지출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한다.

④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광양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업지원업무 담당 국장

2. 시의회 의원, 기업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3.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및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지원대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안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제안자를 국민(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으로 확대(안 제1조, 제3조1호, 제4조, 제6조)
- 권리 승계 및 보상 관련 법령 변경(안 제3조제1호가목, 제24조)
- 공모제안의 정의 및 관련 항목 삭제(안 제3조4호, 제20조제3항)
- 보완하지 않은 제안서의 처리방법 기준 마련(안 제8조)
- 심사기준(실시가능성) 추가(안 제13조)
- 제안 채택여부 결정 기간 명료화(안 제14조제1항)
- 그 외 조례 용어 순화



####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4. 3. 26. ~ 4. 16.(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 5. 일부개정 조례안: 별첨

#### 6. 의견 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기획예산실 기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우편,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33, 기획예산실 (우 57785)
- 전 화 : 061-797-2703
- 팩 스 : 061-797-2574
- 전자우편 : khk5169@korea.kr

※ 우편(전자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 붙임 2

#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광양시 시민과 공무원의**”를 “**행정 전반에 대하여**”로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안이라 함은 시민 또는 공무원**”을 “**제안이란 광양시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광양시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광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을 “**아이디어제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실시제안이라함은**”을 “**실시제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채택제안이라 함은**”을 “**채택제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자체우수제안이라함은**”을 “**자체우수제안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전라남도 (이하 “도”)**”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민과 시 소속공무원**”을 “**국민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실시 제안**”을 “**실시제안**”으로 한다.

제6조 중 “**시민과 소속**”을 “**국민과**”로, “**시에**”를 “**시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기하여**”를 “**명확하게 적어**”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출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산업”을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조정위원회”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채택된 제안”을 “채택제안”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소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창안의 실시”를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실시가능성

제14조제1항 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25조의 규정”을 “제25조”로 한다.

제17조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도에”를 “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창안자”를 “채택제안의 제안자”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주 제안자”를 “주제안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채택된”을 “채택제안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택제안”을 “시장은 채택제안”으로 한다.

제22조 중 “제안이 채택된 후”를 “시장은 채택제안의”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광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를”을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로 한다.

-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25조 중 “채택제안에 대하여는”을 “채택제안을”로,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을 “불채택제안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참여현황”을 “시장은 참여현황”으로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광양시 시민과 공무원의</u>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행정 전반에 대하여</u> ----- ----- ----- ----- ----- ----- -----.</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안”이라 함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u>광양시 지</u></p>	<p>제3조(용어의 정의) ----- ----- -----.</p> <p>1. “제안”이란 <u>광양시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광양시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u>----- ----- -----.</p> <p>가. ----- ----- ----- 「<u>국가공무원 등 직무발</u></p>



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 바. (생략)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  
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  
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  
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  
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  
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  
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 (이하  
“도”라 한다)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나. ~ 바. (현행과 같음)

2. “아이디어제안”이란 -----  
-----  
-----.

3. “실시제안”이란 -----  
-----  
-----  
-----.

<삭 제>

5. “채택제안”이란 -----  
-----  
-----.

6. “자체우수제안”이란 -----  
----- 전라남도지사  
(이하 “도지사”)-----  
-----.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  
-----



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 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  
-----  
-----.

② -----  
-----  
----- 실시제안 -----  
-----  
-----.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  
- 국민과 -----  
-----  
-----  
----- 시가 -----  
-----  
-----.

제7조(제안의 접수) ① ----- 제4조-----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 명확하게 적어 -----  
-----.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 포함-----.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6. (생략)

④ (생략)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실·과·소장으로 구성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  
-----  
----- “위원회” -----  
-----.

② -----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채택제안 -----  
-----

5.·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  
-----  
----- “실무위원회” -----  
-----.

② -----  
-----  
-----  
----- 실·  
단·과장 -----.





② (생략)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의견조회 등) ① (생략)

②시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  
----- 30일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견조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따라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  
----- 제25조에 따라 -----  
-----  
-----  
-----  
-----.



한다.

제17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제안의 등급) ①·② (생략)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9조(인사상 특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제20조(부상금의 지급) ①시장은 채택

-----.

제17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  
-----  
-----  
----- 도지사에게 -----.

제18조(제안의 등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  
-----  
-----.

제19조(인사상 특전)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  
-----  
-----  
-----  
-----.

----- 주제안자 -----  
-----  
-----.

제20조(부상금의 지급) ① ----- 채택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의 -----  
-----  
-----  
-----.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시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광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

제25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기간) ----- 채택제안을 -----  
-----  
----- 불채택제안은 -----  
-----.

제29조(마일리지 포상) ①참여현황 누진제(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일

제29조(마일리지 포상) ① 시장은 참여현황 -----



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포상한다.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관련 조례 조항 변경에 따른 현행화
  - 강사 역량의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과거 수상 경력보다는 다양성 확보와 공정한 평가를 위한 강사선발 심사기준별 배점표 수정
3. 주요 내용
  - 관련 조례 조항 변경에 따른 현행화
    - 제4조, 제6조,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 [별표 1] 강사선발 심사기준별 배점표 중
    - “수상경력(10점)” 삭제 및 “면접 및 강의능력” 배점 수정(40점 → 50점)
    - 동점자 처리: 관내거주, 자격증, 강의경력 으로 수정(수상경력 삭제)
    -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 가점(신설)
      - 전국(대회)이상 3, 도(대회) 이상, 그 밖의 그룹공인 대회 2, 시(대회)이상 1



#### 4. 일부개정 규칙안: 붙임

#### 5.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4. 3. 27. ~ 4. 15.(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 6. 의견 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여성가족과 여성문화센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69(광양시 여성문화센터) (우 57749)
- 전 화: 061-797-2347
- 팩 스: 061-797-4174
- 전자우편: kimks4@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붙임 2

###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3항제4호”를 “제11조제3항제7호”로 한다.

제6조 중 “제16조”를 “제9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3조”를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중 “조례 제17조”를 “조례 제10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강사선발 심사기준별 배점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및 배 점		비 고	
	세 부 항 목	배 점		
총 계 (100)		100		
전 문 성 (15)	○ 대학 이상 해당 관련학과 졸업		• 수료 기간은 3개월 이상 인정	
	○ 전문대학 이상 해당 관련학과 졸업			
	○ 관련교육기관 수료	1년 이상		11
		3개월 ~ 1년 미만		9
관 련 분 야 경 력 (15)	○ 5년 이상		•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장 발급분만 인정	
	○ 3년 이상 ~ 5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미만			
관 련 분 야 자 격 증 (10)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상당, 교사, 정교사, 실기교사, 공인대회심사위원(중앙) ○ 해당분야 자격증 1급 이상 소지자		• 국가공인자격증은 100% 인정  • 민간자격증은 70% 인정	
	○ 산업기사, 기능사 상당, 공인대회심사위원(지방) ○ 해당분야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 그 밖의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공인 인정(증)서, 공인(국제) 사회교육지도자, 공인어학능력시험 우수자 (90점 이상)			
거 주 지 (10)	○ 광양지역			
	○ 그 외 지역			
면접 및 강의능력(50)	○ 면접시험 평정표(강의계획서 포함)		<u>50</u>	

※ 1개 항목에 여러 가지가 적용될 경우 각 항목별 높은 점수 1개만 적용

※ 동점자 처리 : 관내거주, 자격증, 강의경력 순으로 선발

※ 지원자가 1인인 경우에도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점수합계가 60점 미만자는 선발에서 배제한다.

※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 가점을 준다.

- 전국(대회) 이상 3, 도(대회) 이상, 그 밖의 그룹 공인 대회 2, 시(대회) 이상 1





## 현 행

[별표 1]

### 강사선발 심사기준별 배점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및 배 점		비 고	
	세 부 항 목	배 점		
총 계 (100)		100		
전문성 (15)	○ 대학 이상 해당 관련학과 졸업	15	• 수료 기간은 3개월 이상 인정	
	○ 전문대학 이상 해당 관련학과 졸업	13		
	○ 관련교육기관 수료	1년 이상		11
		3개월 ~ 1년 미만		9
관련 분야 경력 (15)	○ 5년 이상	15	•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장 발급분만 인정	
	○ 3년 이상 ~ 5년 미만	13		
	○ 1년 이상 ~ 3년 미만	11		
	○ 1년 미만	9		
관련 분야 자격증 (10)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상당, 교사, 정교사, 실기교사, 공인대회심사위원(중앙) ○ 해당분야 자격증 1급 이상 소지자	10	• 국가공인자격증은 100% 인정 • 민간자격증은 70% 인정	
	○ 산업기사, 기능사 상당, 공인대회 심사위원(지방)	8		
	○ 해당분야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6		
	○ 그 밖의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공인 인정(증)서, 공인(국제) 사회교육지도자, 공인어학능력 시험 우수자 (90점 이상)	6		
수상 경력 (10)	○ 전국(대회) 이상	대 상	10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식 대회에 한함
		우수 이상	9	
		입 선 등	8	
	○ 도(대회) 이상, 그 밖의 그룹 공인 대회	대 상	7	
		우수 이상	6	
		입 선 등	5	
	○ 시(대회) 이상	대 상	4	
		우수 이상	3	
		입 선 등	2	
	거주지 (10)	○ 광양지역	10	
○ 그 외 지역		5		
면접 및 강의능력(4)	○ 면접시험 평점표 ( 강의계획서 포함)	40		

- ※ 1개 항목에 여러 가지가 적용될 경우 각 항목별 높은 점수 1개만 적용
- ※ 동점자 처리 : 관내거주, 자격증, 수상경력, 강의경력 순으로 선발
- ※ 지원자가 1인인 경우에도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점수합계가 60점 미만자는 선발에서 배제한다.

## 개 정 안

[별표 1]

### 강사선발 심사기준별 배점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및 배 점		비 고	
	세 부 항 목	배 점		
총 계 (100)		100		
전문성 (15)	○ 대학 이상 해당 관련학과 졸업	15	• 수료 기간은 3개월 이상 인정	
	○ 전문대학 이상 해당 관련학과 졸업	13		
	○ 관련교육기관 수료	1년 이상		11
		3개월 ~ 1년 미만		9
관련 분야 경력 (15)	○ 5년 이상	15	•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장 발급분만 인정	
	○ 3년 이상 ~ 5년 미만	13		
	○ 1년 이상 ~ 3년 미만	11		
	○ 1년 미만	9		
관련 분야 자격증 (10)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상당, 교사, 정교사, 실기교사, 공인대회심사위원(중앙) ○ 해당분야 자격증 1급 이상 소지자	10	• 국가공인자격증은 100% 인정 • 민간자격증은 70% 인정	
	○ 산업기사, 기능사 상당, 공인대회 심사위원(지방)	8		
	○ 해당분야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6		
	○ 그 밖의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공인 인정(증)서, 공인(국제) 사회교육지도자, 공인어학능력 시험 우수자 (90점 이상)	6		
수상 경력 (10)	○ 전국(대회) 이상	대 상	10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식 대회에 한함
		우수 이상	9	
		입 선 등	8	
	○ 도(대회) 이상, 그 밖의 그룹 공인 대회	대 상	7	
		우수 이상	6	
		입 선 등	5	
	○ 시(대회) 이상	대 상	4	
		우수 이상	3	
		입 선 등	2	
	거주지 (10)	○ 광양지역	10	
○ 그 외 지역		5		
면접 및 강의능력(4)	○ 면접시험 평점표 ( 강의계획서 포함)	40		

- ※ 동점자 처리 : 관내거주, 자격증, 수상경력 순으로 선발
- ※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 가점을 준다.  
- 전국(대회) 이상 3, 도(대회) 이상, 그 밖의 그룹 공인 대회 2, 시(대회) 이상 1



#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안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제안자 변경(안 제3조)
- 별지 서식 공모제안 삭제(안 별지 제1호, 별지 제11호)
- 공모제안의 정의 및 관련 항목 삭제(안 제3조4호, 제20조제3항)
- 심사기준 추가(별지 제5호, 별표1)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4. 3. 26. ~ 4. 16.(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 5. 일부개정 규칙안: 별첨

## 6. 의견 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기획예산실 기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우편,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33, 기획예산실 (우 57785)

- 전 화 : 061-797-2703

- 팩 스 : 061-797-2574

- 전자우편 : khk5169@korea.kr

※ 우편(전자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시민 또는 공무원이**”를 “**조례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조례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택된 제안**”을 “**채택제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9조 및 제13조에 의하여**”를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산입**”을 “**포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u>시민 또는 공무원이</u>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FAX)·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u>조례 제4조에 따라</u> ----- ----- ----- ----- -----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심사기준 등) <u>조례 제13조의 규정</u>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 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4조(심사기준 등) --- <u>조례 제13조에 따른</u> ----- ----- ----- ----- ----- ----- ----- ----- ----- -----</p>
<p>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u>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실시부서의 담당 및 부서장이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p>	<p>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 <u>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u> ----- ----- ----- ----- ----- ----- ----- ----- ----- -----</p>



② ~ ④ (생략)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생략)

③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실시부서의 팀장 및 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 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 제16조에 따라 -----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  
-----  
-----.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 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4조제3항-----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채택제안-----  
-----  
-----  
-----.



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 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

-----  
-----.

④ 제3항에 따라 -----  
-----  
-----  
-----  
-----  
-----  
-----.

제9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  
-----  
-----  
-----  
-----  
-----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  
----- 제10조에 따라 -----  
-----.

② 제1항에 따라 -----



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조  
레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채택제  
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  
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  
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  
-----.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  
-----  
-----  
-----.  
-----  
-----  
----- 포함  
-----.

②·③ (현행과 같음)



##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제 안 서				
수 신 :		접수번호		
제안 제목				
제안 종류 <input type="checkbox"/> 시 민 <input type="checkbox"/> 아이디어 <input type="checkbox"/> 실 시 <input type="checkbox"/> 공 모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 (직위)			
	기여도(%)	이 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 모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 (서명)				
불 임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뒤쪽)

①제안제목	
②제안종류	
③개 요	
④현 황 및 문 제 점	
⑤개선방안 (개선내용)	
⑥기대효과 (개선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li> </ul>
⑦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지원( )</li> <li>▪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기타( )</li> </ul>

- ①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 → 개선방안, 실시제안 → 개선  
 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 → 기대효과, 실시제안 → 개선  
 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  
 성과가 나타난 일자과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  
 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 개 정 안

제 안 서				
수 신 :		접수번호		
제안 제목				
제안 종류 <input type="checkbox"/> 시 민 <input type="checkbox"/> 아이디어 <input type="checkbox"/> 실 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 모 <삭제>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 (직위)			
	기여도(%)	이 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 모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 (서명)				
불 임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인터넷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뒤쪽)

①제안제목	~~~~~
②제안종류	~~~~~
③개 요	~~~~~
④현 황 및 문 제 점	~~~~~
⑤개선방안 (개선내용)	~~~~~
⑥기대효과 (개선성과)	~~~~~
⑦조치사항	~~~~~

- ①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삭제>**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삭제>** → 개선방안, 실시제안  
 → 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삭제>** → 기대효과, 실시제안  
 → 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  
 선성과가 나타난 일자과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  
 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5호서식]

심사평가서									
접수번호	제목	심사기준 및 점수						심사의견	비고
		계 (평균)	창의성 (20)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	계속성 (20)	적용 범위 (15)	노력도 (15)		

심사평가서									
접수번호	제목	심사기준 및 점수						심사의견	비고
		계 (평균)	창의성 (25)	경제성 또는 능률성 (15)	계속성 (15)	실시 가능성 (25)	적용 범위 (10)		

[별지 제6호서식]

재심요청서			
수 신 :			
제안제목			
접수번호	제안종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	주소 또는 소속·직급( 직위)		
《재심요청 사유》			
<p>「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서명)</p>			
<p>*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p>			

재심요청서			
수 신 :			
제안제목			
접수번호	제안종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	주소 또는 소속·직급( 직위)		
《재심요청 사유》			
<p>「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서명)</p>			
<p>* 인터넷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p>			



[별지 제11호서식]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년)**

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 (단위 : 건)

접 수					채 택					전라남도 추천
계	시민 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 제안	공모 제안	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2. 부상금 지급 현황

창안등급	제안자 (실시자)	제 안 제 목	지급액 (만원)	비고
계				

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창안등급	제안자 (실시자)	제 안 제 목	지급액 (만원)	지급 일자
계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년)**

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 (단위 : 건)

접 수					채 택					전라남도 추천
계	시민 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 제안	공모 제안	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2. 부상금 지급 현황

창안등급	제안자 (실시자)	제 안 제 목	지급액 (만원)	비고
계				

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창안등급	제안자 (실시자)	제 안 제 목	지급액 (만원)	지급 일자
계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4조 관련)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 점	
합 계		100점	
창 의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li> <li>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li> </ul>	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	경제성	예산절감 및 시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30점
	능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li> <li>행정목적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li> </ul>	30점
계 속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li> <li>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지는가?</li> </ul>	20점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li> <li>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li> <li>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li> </ul>	15점	
노 력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li> <li>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li> </ul>	15점	

심사항목	평점기준	평점				
6개 항목	합계	100점				
창 의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li> <li>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li> </ul>	25점				
	<table border="1"> <tr> <td>매우 미흡 (0)</td> <td>미흡 (7)</td> <td>보통 (13)</td> <td>우수 (19)</td> <td>매우 우수 (25)</td> </tr> </table>	매우 미흡 (0)	미흡 (7)	보통 (13)	우수 (19)	매우 우수 (25)
매우 미흡 (0)	미흡 (7)	보통 (13)	우수 (19)	매우 우수 (25)		
경제성 또는 능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절감 및 시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li> <li>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li> <li>행정목적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li> </ul>	15점				
	<table border="1"> <tr> <td>매우 미흡 (0)</td> <td>미흡 (3)</td> <td>보통 (7)</td> <td>우수 (11)</td> <td>매우 우수 (15)</td> </tr> </table>	매우 미흡 (0)	미흡 (3)	보통 (7)	우수 (11)	매우 우수 (15)
매우 미흡 (0)	미흡 (3)	보통 (7)	우수 (11)	매우 우수 (15)		
계 속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li> <li>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지는가?</li> </ul>	15점				
	<table border="1"> <tr> <td>매우 미흡 (0)</td> <td>미흡 (3)</td> <td>보통 (7)</td> <td>우수 (11)</td> <td>매우 우수 (15)</td> </tr> </table>	매우 미흡 (0)	미흡 (3)	보통 (7)	우수 (11)	매우 우수 (15)
매우 미흡 (0)	미흡 (3)	보통 (7)	우수 (11)	매우 우수 (15)		
실시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화하여 시정에 반영 가능한 제안인가?</li> <li>시행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가?</li> </ul>	25점				
	<table border="1"> <tr> <td>매우 미흡 (0)</td> <td>미흡 (7)</td> <td>보통 (13)</td> <td>우수 (19)</td> <td>매우 우수 (25)</td> </tr> </table>	매우 미흡 (0)	미흡 (7)	보통 (13)	우수 (19)	매우 우수 (25)
매우 미흡 (0)	미흡 (7)	보통 (13)	우수 (19)	매우 우수 (25)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li> <li>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li> <li>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li> </ul>	10점				
	<table border="1"> <tr> <td>해당부서 (매우 한정적) (0)</td> <td>일부 부서 (한정적) (3)</td> <td>전부서 (보통) (6)</td> <td>소속기관 (전 시민) (10)</td> </tr> </table>	해당부서 (매우 한정적) (0)	일부 부서 (한정적) (3)	전부서 (보통) (6)	소속기관 (전 시민) (10)	
해당부서 (매우 한정적) (0)	일부 부서 (한정적) (3)	전부서 (보통) (6)	소속기관 (전 시민) (10)			
노 력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li> <li>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li> </ul>	10점				
	<table border="1"> <tr> <td>매우 미흡 (0)</td> <td>미흡 (1)</td> <td>보통 (4)</td> <td>우수 (7)</td> <td>매우 우수 (10)</td> </tr> </table>	매우 미흡 (0)	미흡 (1)	보통 (4)	우수 (7)	매우 우수 (10)
매우 미흡 (0)	미흡 (1)	보통 (4)	우수 (7)	매우 우수 (10)		



##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4. 3. 27.

##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4. 3. 27. ~ 2024. 4. 9.(14일간)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도로위치	길이	너비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39-1번지 외 1필지 (138-4)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39-1번지	42m	6m	48m <sup>2</sup>	가○지(주)	동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061-797-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